

[2019년 1~2월] EU 수출현안□수입제도 모니터링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EU 농산물 수출 증가

－ 출처 : 유럽위원회(2019.02.03.)

(https://ec.europa.eu/info/sites/info/files/food-farming-fisheries-trade/documents/monitoring-agri-food-trade-no-2018_en.pdf)

- 유럽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월간 무역보고서를 발표함.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, 2018년 11월 농산물 수출액은 125억 유로를 달성함. 이는 10월보다 약 4.6% 감소한 수치이나, 10월에 이은 연중 2번 째 최고치임
- 2018년 11월 농산물 수입액은 10.2억 유로를 달성함. 이로써 11월 유럽연합 농산물의 수출입 무역수지는 2.3억 유로의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됨
- 수출부문 중 전월대비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낸 품목으로는 ① 곡물류(8,000만 유로), ② 탄산수(3,700만 유로), ③ 물 및 청량음료(3,400만 유로)가 있음
- 또한, 가장 큰 수출 감소를 나타내는 식품군은 ① 밀로써 전월대비 1.09억 유로 수출규모가 줄어들었으며, ② 설탕 및 ③ 육류 또한 각각 6,900만 유로와 4,200만 유로의 감소를 보임
- 전년도 동기대비 EU가 농산물 수출 증가를 나타낸 수출 대상국은 ① 알제리(5,400만 € ↑), ② 사우디아라비아(5,100만 € ↑), ③ 미국(4,300만 € ↑) 등으로 나타남
- 한편, 미국,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對 EU 수입은 전년도 동기대비 각각 2억 6,600만 유로, 1억 6,800만 유로의 증가를 나타냄
- 주요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, 정밀하지 않은 곡물이 2억 4,300만유로 (128%)의 수입 증가를, 열대과일과 팜유가 각각 1억 5,100만 유로와 1억 1,800만 유로의 수입 감소를 나타냄

2. 규정 (EU) 2019/238 발표 : 오보트란스페린¹⁾ 최대 잔류치 개정

- 출처:EUR-Lex(2019.02.08)

(<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PDF/?uri=CELEX:32019R0238&rid=10>)

- 유럽연합은 오보트란스페린(ovotransferrin)의 최대 잔류 수치에 관한 규정 (EU) 2019/238을 발표함
 - 동물에서 기원하여 약학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의 최대 잔류 수치(MRL, Maximu Residue Limit)에 대한 기존 규정으로는 2009년도 5월 6일 제정된 규정 (EC) No 470/2009²⁾와 (EU) No 37/2010이 수립된 바 있음. (EU) 2019/238은 상기 두 규정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는 규정임
- 유럽연합은 2018년도 7월 19일 유럽의약품청(European Medicines Agency)가 발표한 수의학 물질의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수정함
 - 규정 (EC) No 470/2009 17조항에서는 약학적으로 반응하여 식품 제조, 살균처리, 가축·가금사육 관리 등을 위하여 수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의 최대 잔류치를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음
 - 규정 (EU) No 37/2010의 부록의 표1은 상기 규정 No 470/2009 중, 동물에서 기원하여 식품으로 식용되는 물질 및 유형 및 분류를 정리함
 - 오보트란스페린은 해당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
 - 닭과 계란 조직 내 함유되어 있는 오보트란스페린의 사용허가 요청서가 유럽의약품청에 제출됨
 - 수의약품 위원회(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veterinary use)는 유럽의약품청의 의뢰를 받고 해당 물질의 사용당위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, “인체 건강을 위한 오보트란스페린의 최대잔류수치의 설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.”는 결론을 내림
 - 이에 따라, 유럽의약품청은 기존 규정 (EU) No 37/2010을 수정하고 해당물질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 (EU) 2019/238을 제정함
 - 신규 규정에 따르면, 오보트란스페린은 ‘최대 잔류 수치 없음(no MRL required)’ 카테고리에 포함됨

1) 오보트란스페린(ovotransferrin) : 난백 단백질의 약 14%를 차지하고 철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로써, 항균, 항바이러스 작용을 함. 철요구성 미생물배지에 난백을 첨가하면 미생물은 철분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미생물 생육을 저지하게 됨. 농촌진흥청 참고

2) 해당 규정은 선행하는 규정 (EEC) No 2377/90을 폐지, 지침 Directive 2001/82/EC와 규정 (EC) No 726/2004를 수정, 취합한 규정임

- 해당 신규 규정은 유럽연합관보(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)를 통해 공표될 예정³⁾이며, 공표일 20일째부터 회원국 전역에서 일괄적으로 효력이 발생함
- 수정된 유럽 연합 규정 (EU) 2019/238의 붙임 I 내용은 아래와 같음

물질명	최대잔류수치	동물 종류	기타사용 규정 (규정 (EC) 470/2009 14조 7항에 따름)	치료적 분류
오보 트랜스 페린	없음	닭	흡입방식 사용 허가	항감염제
		가금류 (닭 제외)	흡입방식 사용 허가 알을 낳는 동물에는 사용금지	

3. 규정 (EU) 2019/37 발표 : 식품보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물질에 관한 기존 규정 수정

– 출처 : EUR-Lex(2019.01.10.)

(<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PDF/?uri=CELEX:32019R0037&rid=38>)

- 유럽연합은 식품보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물질에 관한 규정 Regulation (EC) No 1935/2004과 2004년도 10월 27일 관련하여 발표된 유럽의회 지령 80/590/EEC와 89/109/EEC의 5조 (1)의 (a), (b), (c), (d) 조항, 11조 (3)조항, 12조 (6)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규정 (EU) 2019/37을 발표함
 - 유럽연합은 이후 2011년도, 2004년도 발표된 규정과 관련한 ‘식품보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물질의 리스트’를 작성하고 규정 (EU) No 10/2011을 발표한 바 있음. 해당 리스트는 부록 (Annex) I과 III에 기재됨
- 한편, 유럽연합은 기존 문서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최근에 실행된 과학 연구결과에 따라 부록에 포함된 일부 물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는 신규 규정 (EU) 2019/37을 발표함
- 규정 (EU) 2018/831에서 유럽위원회로부터 사용이 허가된 테트라하이드로

3) 2019.02.08. 공표됨

나프탈렌(tetrahydronaphthalene) 1,2,3,4, 디카르복시산(dicarboxylic acid), 다이메틸 에스테르(dimethyl ester)가 리스트에 추가됨

- 해당 물질들은 기존에 사용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2011년도의 규정 (EU) 10/2011에서는 영문 출판 과정에서 철자표기의 오류로 누락된 바 있음

- 2017년도 발표된 유럽안전청의⁴⁾ 의견을 반영하여 에폭시프로폭시 2,3를 온도전도율이 낮은 물질,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산 에스테르 (polyethylene terephthalate), 폴리카보네이트(polycarbonate) 등 유리섬유 물질의 사용에 풀(접착제) 용도로 허가함
- 위원회는 또한 규정 (EU) 2017/.752에서 허가된 크로톤산(crotonic acid)의 첨가중합체(addictive or a onomer)로써의 사용을 0.05 mg/kg의 한도 내 허가함
- 해당 신규 규정은 2020년도 1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해당 일자 이전, 관련 물질의 사용은 규정 (EU) No 10/2011의 요건을 준수함
- 신규규정 규정 (EU) 2019/37 부록 I에 추가, 수정된 물질의 리스트

FCM* 번호	물질명	첨가 중합체 사용여부	주요 규정내용
`467	크로톤산	가능	
`744	하이드록시부 타노익산 3, 혼성중합체	불가	규정 (EU) No 10/2011의 부록 I-표 4의 내용을 따라 박테리아 발효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사용함
`1066	테트라하이드로 나프탈렌 1,2,3,4	불가	규정 (EU) No 10/2011의 부록 III-표 2의 내용을 따라 사용되며, 사용량은 8행에 명시된 용량을 적용함
`1068	에폭시프로폭시 2, 3	불가	유리 섬유 사용에 한하여 접착제로 사용함. 해당물질의 잔여물량은 0.01mg/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

*FCM 번호 : Food Contact materials(식품접촉물질) 번호

4) EFSA Journal 2017;15(10):5014
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◦ 없음

III

통관문제 사례·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발생일자	국가	통관번호	HS code	상품명(제조사)	중량(kg)	불합격사유	조치사항
2019.01.07	독일			건조미역	3,557 / 3,727mg/kg ppm	성분부적합 (요오드 함량 기준치* 초과)	시장유통회수
2019.01.17	“			“	300mg/kg ppm	“	구매자 내용 전달
2019.01.21	“			“	323mg/kg ppm	“	시장유통회수

*기준치 : 20mg/kg ppm

※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